

신 주 발 행 공 고

주식회사 온다 주주분들께

2025년 2월 1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제 7종 상환전환우선주식 65,869주
- 신주식의 발행가액 : 액면가 500원, 발행가 75,908원
- 발행금액 총액 : 발행 금액 : 4,999,984,052원
- 발행 후 총 주식 수 : 881,589주
- 신주 배정기준일 : 2025년 3월 4일 (화)
- 신주 청약일 : 2025년 3월 20일 (목)
- 청약 증거금 납입 기간 : 2025년 3월 5일 (수) ~ 3월 20일 (목)
- 주금 납입기일 : 2025년 3월 21일 (금)
- 주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 제 7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 <별첨1>과 같음
- 인수 방법 : 배정기준일 현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
1주당 0.08075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 실권주 및 단수주 등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에 대한 처리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거 처리한다.

2025년 2월 18일

주식회사 온다

대표이사 오현석

<별첨 1> 제 7 중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제1조 일반 사항

- (1) 본건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로서 다음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권, 상환권 및 전환권을 내용으로 한다.
- (2) 본건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전환권 행사에 따라 본건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 보통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 (3) 본건 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4)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하 “존속기간”)으로 하며, 존속기간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주식은 배당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 (2) 본건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주식의 주주(이하 “본건 주주”)는 본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이익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본건 주주는 보통주의 1주당 배당금이 우선주의 1주당 배당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본 항에서 ‘참가적 우선주’라 함은 우선주식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남은 경우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보통주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우선주식을 말하고, ‘누적적 우선주’라 함은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 사업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배당금이 있으면 누적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우선주식을 말한다.
- (3)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주주가 보유한 본건 주식 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이 각 주당 동일한 수의 주식이 배당 또는 발행되도록 하여 본건 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을 배당 또는 발행한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4)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가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주식은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1. 우선적 분배 : 본건 주주는 본건 주식의 총 신주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을 보통주식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 받기로 한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참가적 분배 : 제1호에 따라 우선적 분배를 한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분배하되,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 받기로 한다.
-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본 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 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3) 본건 발행 이후에 추가 증자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건이 우선한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 (1) “전환가격”이란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규정된 개념으로서 최초 전환가격은 1주당 인수금액으로 한다.
- (2) “전환비율”이란 본건 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로서, 최초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3) 투자자는 본건 주식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전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건 주주는 본건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전환청구서”) 2통 및 해당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다.
2. 본건 주주가 전환 청구를 한 경우 전환될 본건 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2호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및 본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본건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단,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5) 본건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Refixing)된다.

1.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이하 위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를 인수한 자를 “후행투자자”)로서, 위 후행투자자의 전환가격이 조정되어 본건 주식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건 전환가격을 후행투자자의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3.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5. 회사가 타사와의 인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은 그 주당 평가가액으로 조정된다.

- (6) 회사는 본건 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 (7)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i)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ii)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주주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에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일까지 회사에 대해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사는 본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 (3) 상환금액은 본건 신주인수대금 및 그에 대하여 보유한 기간(발행일 포함) 동안 연복리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4) 회사는 본건 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 2 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해관계인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 1 항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2) 본건 주식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